

공연장 외 공연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및 해설서

- 목 차 -

I	개발 배경 및 목적	p.1
II	체크리스트 계층화 모형	p.1
III	공연장 외 공연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p.2
IV	공연장 외 공연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해설서	p.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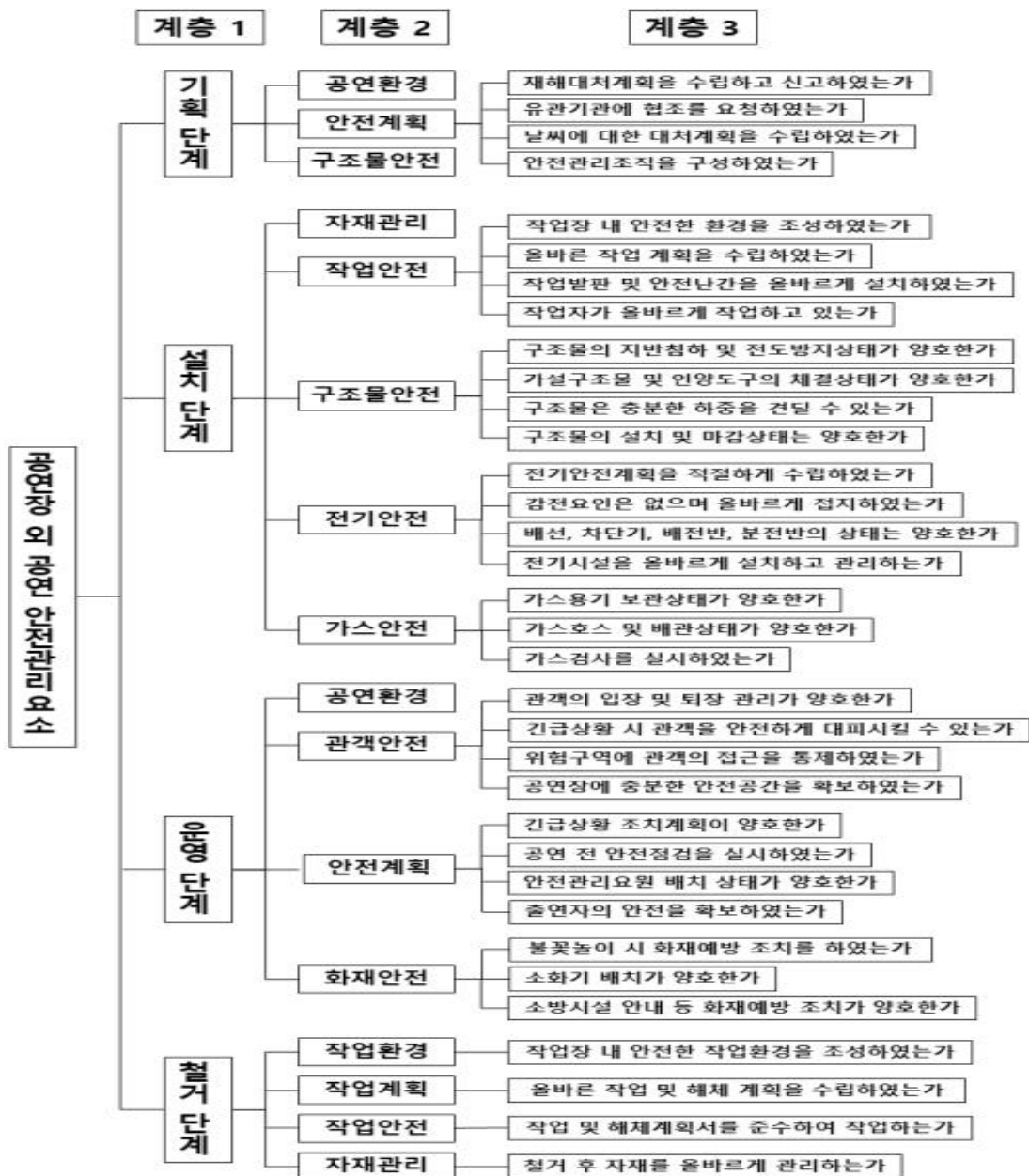
2023. 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I. 개발 배경 및 목적

- 공연장 외 공연의 경우, 국내 안전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준수하는 것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 관리 부주의 등에 의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
- 또한, 공연 안전관리 전문가가 부족하여, △비전문가 또는 안전관리 전담 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안전 점검, △안전 점검 기준의 일관성 부족, △점검 시간 미확보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기획 단계부터 공연 전반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획 - 설치 - 운영 - 철거”의 공연 전 단계에서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체 안전관리 체크리스트”와 “해설서”를 개발하여 배포함.

II. 체크리스트 계층화 모형



Ⅲ. 공연장 외 공연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1. 기획단계

단계	구분	점검내용	중요도	점검결과				세부기준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기획단계	공연환경	공연 장소로 적합한가? (최대 관객 수용 가능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우, 폭염, 산불, 하천범람 등 돌발성 위험이 높은 지역이 아닌가? - 예상되는 최대관객수를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장소인가?
기획단계	안전계획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신고하였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경우, 공연 개시 14일 전 재해대처계획서를 신고하였는가? (변경신고는 7일전까지) - 재해대처계획서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는가? -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는가? -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는가? ※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공연장안전지원센터,2018) 참고 - 재해대처계획서 신고시 장소 및 시설관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였는가?
기획단계	안전계획	안전관리조직(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을 구성하였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되는 관람객의 수에 맞게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고 인적사항 및 업무수행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는가? - 지정된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역할을 숙지하고 있는가?
기획단계	안전계획	날씨(폭우, 폭설, 강풍 등)에 대한 대처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염, 폭우, 강풍 등 기상이변에 대한 대처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공기질이 좋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기획단계	안전계획	유관기관(관할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개최 관련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협조를 요청하고 담당자 연락처를 확보하였는가? - 경찰서·소방서와 협의하여 주차 및 교통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지원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화재 발생 등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소방차, 구급차량 등의 진입로를 확보하였는가?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계획(관람객·면적 당 의료소 수, 장비, 의료인 구성)은 적정한가?
기획단계	구조물안전	구조기술사로부터 구조물의 안전성을 검토 받았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기술사로부터 구조해석을 통해 안전성을 검토 받았는가? - 구조물에 적용되는 하중(출연인원, 장비, 풍하중 등), 지반 조건 등을 구조해석에 적절하게 반영하였는가? - 구조물에 적용되는 하중에 따른 구조물의 전도방지(고정형 앵커볼트, 켄틀리지 등)를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 - 구조검토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였으며,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았는가? - 최대 강풍 속도를 초과할 경우, 구조물의 전도 및 붕괴 가능성을 고려하였는가?

2. 설치단계

단계	구분	점검내용	중요도	점검결과				세부기준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설치단계	자재관리	공연을 위해 반입된 자재의 상태는 양호한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대용 합판, 무대막, 텐트, 막지 등은 방염성능검사를 받았는가? - 반입된 가설기자재는 안전인증을 취득하거나 성능시험을 실시하였는가? - 반입된 자재에 부식 및 결함 등이 없는지 자체적으로 검수하였는가? - 반입된 자재는 시공상세도에 표시된 치수, 재료 등 설계규격과 일치하는가?
설치단계	자재관리	인양도구(와이어로프, 달기체인, 섬유벨트, 샤클 등)의 상태는 양호한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이어로프 및 달기체인의 상태는 양호한가? - 섬유벨트(벨트 슬링)의 상태는 양호하고 안전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인가? - 샤클의 상태는 양호하고 안전하중, 제조사, 핀 직경이 표시되어 있는가?
설치단계	작업안전	작업장 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였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 내 출입통제 조치를 실시하였는가? -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작업구간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는가? - 야간작업 시 150lux이상의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였는가? - 작업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하였는가?
설치단계	작업안전	올바른 작업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이변에 따른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고 있는가? - 작업순서를 올바르게 정하고 작업자들에게 전파하였는가?
설치단계	작업안전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올바르게 설치하였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올바르게 작업발판을 설치하였는가? (작업공간 여유 폭 확보를 위해 상부 작업시 작업발판 2개 이상 설치 권장)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의 바닥면 등에서 90cm 이상인 지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는가? - 중량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을 표시하고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하였는가?
설치단계	작업안전	작업자가 올바르게 작업하고 있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자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는가? - 높이 2m이상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실시하는가? - 작업자는 같은 수직면 상의 위·아래에서 동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가?
설치단계	구조물안전	구조물의 지반침하 상태는 양호한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반상태는 견고하며, 적절한 지반침하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갈목 또는 깔판)를 하였는가? - 받침철물과 지반사이는 밀착되게 설치되었는가? -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1/3 이상이 지지대에 삽입되어 설치되었는가?
설치단계	구조물안전	구조물의 전도방지 조치를 적절하게 하였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상세도에서 제시한 전도방지대로 적절하게 시공되었는가? - 가설구조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긴장장력을 유지하고, 사용하는 긴장장치(전선바이스 등)는 작용하는 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가? - 캔틀리지 사용시 와이어로프가 작용하는 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아웃트리거는 4방향 설치를 기본으로 하되, 4방향 설치가 어려울 경우 캔틀리지 추가 설치 등 별도의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였는가?

단계	구분	점검내용	중요도	점검결과				세부기준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설치단계	구조물안전	가설구조물의 체결상태는 양호한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평재와 수직재는 직각으로 설치하고 항상 수직 및 수평을 유지하고 흔들림이 없는가? - 구조물의 연결부위는 부식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고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 구조물의 흔들림 및 좌굴을 방지하게 위해서 브레싱(가새재)를 견고하게 체결하고 연결부위는 부식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설치단계	구조물안전	자재 및 장비 인양도구의 체결상태는 양호한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이어로프 클립 체결 방법 및 수량은 적정한가? - 섬유벨트(벨트 슬링) 및 샤클 등 체결도구의 체결상태는 양호한가? - 자재 및 장비를 인양하기 위한 모터의 정격하중은 적정한가?
설치단계	구조물안전	장비는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는 낙하 및 전도위험이 없도록 적절한 장치(안전체인 등)를 사용하여 고정되어 있는가? - 조명장비는 안전고리를 설치하였는가?
설치단계	구조물안전	무대 바닥은 충분한 하중을 견딜 수 있으며 올바르게 설치되었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물 및 무대는 장비 및 출연 인원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가? - 바닥재에 이탈방지조치를 실시하였는가? - 무대바닥의 단차 등에 의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는가? - 무대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되어있거나 적절한 미끄럼방지 조치가 되어있는가?
설치단계	구조물안전	구조물의 설치 및 마감상태는 양호한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물 설치 후 모서리 방호조치나 못 등이 튀어나온 부분을 마감처리 하였는가? - 무대단상 및 관람석의 계단 및 부딪히기 쉬운 구조물에는 식별을 할 수 있는 표시를 하였는가? - 무대단상 및 관람석의 계단에는 미끄러짐 방지조치를 실시하였는가? - 도면 및 구조검토결과에 따라 설치하였으며 구조기술사로부터 점검을 받았는가? - 구조물의 침하, 변형, 변위 등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설치단계	구조물안전	행사장 내 텐트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텐트 고정용 앵커볼트의 수량 및 매립깊이는 외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충분한가? - 막지(천막)간 체결은 견고하게 하였는가? - 우천대비 배수로를 확보하고 텐트 내부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 강풍이 예상되는 경우 측면의 막지를 텐트 기둥에 결속하는 등 전도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하였는가?
설치단계	전기안전	전기안전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였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전에 공연장 전기용량(공연장 전체 전기용량, 부스별 전기용량)을 계산하였는가? - 사전에 계산된 전기용량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가? - 발전차 급유에 대한 계획(인근 주유소와의 연락체계 구축 등)을 수립하였는가? - 비상 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전원을 확보하였는가?
설치단계	전기안전	전기시설의 감전요인은 없으며 올바르게 접지하였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전차단기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 전선피복이 손상되거나 심선의 노출, 연결 불량, 미 접지전선 사용 등으로 감전요인이 없는가? - 배선의 접속부 및 충전부는 견고하게 고정되고 적절한 방수조치가 되어있는가? - 접지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 접지봉은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되어 있는가?

단계	구분	점검내용	중요도	점검결과				세부기준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설치단계	전기안전	배선, 차단기, 배전반, 분전반의 상태는 양호한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선 및 전장품은 견고하게 고정되고 파손 및 변형이 없는가? - 관객이 이동하는 주요 동선에는 배선이 보호덮개로 조치되어 있는가? - 전선은 주변 화기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였는가? - 개폐기(차단기)는 적합한 위치에 설치되고 열화 및 손상이 없는가? - 개폐기(차단기)에 정격퓨즈를 사용하고 있는가? - 배전반 및 분전반의 외함은 견고하게 고정되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가? - 배전반 및 분전반은 파손 및 변형이 없는가?
설치단계	전기안전	전기시설을 올바르게 설치하고 관리하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설비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완료 후 사용 전 점검을 받았는가? - 전기시설의 침수대비를 적절하게 하였는가? - 전기시설 연결 부근에 인화성 및 발화성 물질이 없는가? - 발전기, 발전차, 배전반 등은 독립적인 공간에 설치하고 펜스 등으로 위험지역표시 및 접근 금지 표시가 되어있는가?
설치단계	가스안전	가스용기의 보관상태가 양호한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용기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밀폐된 보관실에 보관되고 있는가? - 가스용기의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가? - 가스용기의 전도방지 조치가 되어 있으며, 여러 가스용기가 있을 경우 스트랩으로 묶어서 관리하고 있는가? - 가스용기 보관 구역은 화기시설과 안전거리(2m 이상)를 확보하였는가? - 가스용기 보관 구역에 관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였는가? - 가스용기 보관함 및 가스누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가스누출경보기 및 가스누출 자동차 단장치를 설치하였는가?
설치단계	가스안전	가스 호스 및 배관 상태가 양호한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 호스 및 배관에 손상이 없는가? - 가스배관은 바닥으로부터 이격하고 일정 길이마다 고정장치를 부착하였는가? - 가스배관은 강관 사용을 권장하며 고무호스로 사용할 경우 길이 3m 이하로 사용하였는가? - 중간밸브가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가? - 가스 미사용 시에는 밸브가 잠겨있는가?
설치단계	가스안전	가스 검사를 실시하였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가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체크하고 있는가? (휴대용 가스탐지기 사용 권장) - F&B 부스의 경우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았는가? (가스누출 경보기 및 가스누출 차단장치 설치 및 가스완성검사증명서 확인)

3. 운영단계

단계	구분	점검내용	중요도	점검결과				세부기준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운영단계	공연환경	공연일 날씨를 확인하고 폭염 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일의 날씨에 따른 위험도(풍속, 강우, 강설)를 확인하였는가? - 풍속계를 설치(지상 10m 높이)하거나 휴대용 풍속계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풍속을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 강풍에 의해 구조물 파편 및 기타 물품이 날릴 위험이 없는가? - 폭염 및 공기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 공연 및 행사 운영 시 발생 가능한 민원(소음, 생활하수처리 등)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운영단계	관객안전	관객의 입장 및 퇴장 관리가 양호한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이상의 출입구를 만들고 입장로와 퇴장로를 분리하여 관객의 출입을 분산하였는가? - 공연 및 행사장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 차량 돌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호조치는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가?
운영단계	관객안전	긴급 상황 발생 시 관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상황 발생 시 관객의 피난동선을 확보하였는가? - 관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송시설 및 종합상황실을 준비하였는가? - 관객 대상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는가? - 노약자,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관객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운영단계	관객안전	위험구역에 관객의 접근을 통제하였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구역에 관객 접근을 통제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였는가? - 위험구역에 펜스 및 safetyline을 설치하고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는가? - 카메라 등 장비가 설치된 타워 및 위험구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관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 환풍구 등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시설물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가?
운영단계	관객안전	공연장에 충분한 안전공간을 확보하였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객 동선 및 관람공간을 제한하기 위하여 펜스를 설치하고 견고하게 고정하였는가? - 야간 공연 시 펜스에 시인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였는가? - 무대와 객석 사이 충분한 안전공간(2m 이상)을 확보하여 관객이 무대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였는가? - 객석과 객석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였는가? - 스탠딩 구역의 출입 적정 인원을 파악 및 관리하고 있는가?
운영단계	안전관리계획	긴급 상황 발생 시 조치계획이 양호한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상황 발생 시 빠른 조치를 위하여 안전관리자 연락처 및 비상연락망을 게시하였는가? - 응급의료장비(AED등)비치 및 의료진과 구급차를 배치하였는가? - 구조물 사고 등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크레인 등 장비 보유자(업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가?

단계	구분	점검내용	중요도	점검결과				세부기준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운영단계	안전관리계획	공연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전 안전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하여 점검을 수행하였는가? - 공연 및 행사 중 자체 안전점검(수시 안전점검)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였는가? - 안전점검결과 부적합 사항 등에 대한 조치는 즉시 시행되고 있는가?
운영단계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요원 교육 및 배치상태가 양호한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요원은 임무 수행에 적합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임무별 안전교육(1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비상연락망을 숙지시켰는가? - 근무표에 의해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며, 교대 시 근무수칙 및 근무 중 특이사항을 적절히 인계되도록 운영되고 있는가? - 혼잡이 예상되는 안전취약구역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주기적 순찰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안전관리요원에게 필요한 안전용품과 비표를 지급하고 시인성이 좋은 복장을 지급하였는가?
운영단계	안전관리계획	출연자에 대한 안전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을 확보하였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자에 대한 안전교육(1시간이상) 수료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출연자와 관객의 안전을 위하여 출연자 이동로를 별도로 확보하였는가?
운영단계	화재안전	불꽃놀이 및 특수효과 사용 시 화재예방조치를 하였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속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풍속에 따른 불꽃놀이 진행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시) 풍속 5m/s 이상 시 불꽃놀이 자제 요망 (법령) 풍속 10m/s 이상 시 꽃불류 사용 중지 - 불꽃 및 화염 사용 시 꽃가루 등의 가연물질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이 없는가? (불꽃 및 화염과 꽃가루 사용 시간 간격 확보 또는 방염 처리된 꽃가루 사용 권장) - 낙진, 불발된 폭죽이 낙하할 수 있는 구역에 대한 통제는 적절한가?
운영단계	화재안전	공연 및 행사장 내 소화기 배치가 양호한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및 행사 규모에 맞게 적절한 소화기를 준비하고 정위치에 배치하였는가? (부스별 1개 이상의 소화기 설치, 무대기계나 전장부품이 있는 곳은 청정가스소화기 사용) - 안전핀, 호스, 노즐의 부착상태가 양호한가? - 소화기 사용가능여부(지시압력계바늘이 녹색범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F&B 부스의 경우 K급 소화기를 설치하였는가?
운영단계	화재안전	소방시설 위치 안내, 흡연 장소 지정 등 화재예방 조치가 양호한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의 위치를 표기하고 배치도를 부착하였는가? (야외 공연이나 소방시설 배치도 부착이 어려운 경우 공연 쉬는 시간에 무대영상을 통해 소방시설 및 응급조치방법, 대피 집결지 등을 안내) - 행사장 내 흡연 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화기주변에 가연물을 보관하지 않는가? - 화기와 인접한 막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석고보드 등으로 차단하였는가?

4. 철거단계

단계	구분	점검내용	중요도	점검결과				세부기준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철거단계	작업환경	작업장 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였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 내 출입통제 조치를 실시하였는가? -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작업구간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는가? - 야간작업 시 150lux이상의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였는가? - 작업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하였는가?
철거단계	작업계획	올바른 작업 및 해체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이변에 따른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고 있는가? - 해체작업순서가 포함된 해체작업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철거단계	작업안전	작업 및 해체계획서에 맞게 올바르게 작업하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자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는가? - 작업근로자는 같은 수직면 상의 위·아래에서 동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가? - 해체 전 대상 구조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해체작업을 수행하는가? - 해체는 사전에 계획된 순서대로 실시하며, 수평 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고 있는가? - 해체 시 구조물 전도 방지조치를 실시하였는가?
철거단계	자재관리	철거 후 자재를 올바르게 관리하였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체된 자재들은 구조물에 적재하지 않고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는가? - 철거 후 자재에 결함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하였는가? - 철거 후 결함이 확인된 자재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였는가?

IV. 공연장 외 공연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해설서

점검사항	공연 장소로 적합한가? (최대 관객 수용 가능 등)					중요도	★★★	
단계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공연환경	안전계획	구조물안전	
		○				○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							
세부기준	권장사항	- 폭우, 폭염, 산불, 하천범람 등 돌발성 위험이 높은 지역이 아닌가?						○
	권장사항	- 예상되는 최대관객수를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장소인가?						×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					
문제점 및 보완계획								

점검사항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신고하였는가?					중요도	★★★	
단계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공연환경	안전계획	구조물안전	
	○					○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p><공연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재해대처계획의 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경우, 공연개시 14일 전 재해대처계획서를 신고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할 것 <참고자료> -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공연장안전지원센터, 2018) 							
세부기준	필수 사항	-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경우, 공연 개시 14일 전 재해대처계획서를 신고하였는가? (변경신고는 7일전까지)						
	필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대처계획서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는가? ·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는가? ·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는가? - 재해대처계획서 신고시 장소 및 시설관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였는가? 						
	권장 사항	- 공연을 하려는 자(장소 및 시설 사용자인 공연 기획사 및 제작사 등)가 재해대처계획 신고 전, 장소 및 시설관리자가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점검사항	안전관리조직(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을 구성하였는가?					중요도	★★★	
단계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공연환경	안전계획	구조물안전	
	○					○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p><공연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 안전관리조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 안전관리조직을 설치 후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p><공연법 제11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 안전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총괄책임자 :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전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 안전관리담당자 :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이전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세부기준	필수 사항	- 예상되는 관람객의 수에 맞게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고 인적사항 및 업무수행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는가?						
	필수 사항	- 지정된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역할을 숙지하고 있는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점검사항	날씨(폭우, 폭설, 강풍 등)에 대한 대처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중요도	★★★	
단계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공연환경	안전계획	구조물안전	
	○							○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p><폭염 발표 기준, 예보업무규정 별표 8 특보의 발표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단계 : 31℃ 이상(폭염특보 기준은 아님) - 주의보 :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시 - 경보 : 35℃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시 <p><대기오염경보 발령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PM-10) : (주의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경우 / (경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경우 - 초미세먼지(PM-2.5) : (주의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75$\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경우 / (경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경우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속 10m/s 초과 시 무대부 보강, 20m/s 초과 시 관객에 고지 및 공연중지 협의 - 강우량이 10mm/hr 초과 시 안전상태 점검, 20mm/hr 초과 시 관객에 고지 및 공연중지 협의 - 강설량이 1mm/hr 초과 시 천막 등 적설상태 점검, 2mm/hr 초과 시 관객에 고지 및 공연중지 협의 - 폭염주의보 발효 시 객석 그늘막 설치 및 관객안전요원 증원, 폭염경보 발효 시 살수차 운영 및 공연 시간대 조정 협의 -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효 시 마스크 착용 권고 및 관객안전요원 증원 							
세부기준	권장사항	- 폭염, 폭우, 강풍 등 기상이변에 대한 대처계획을 수립하였는가?						
	권장사항	- 공기질이 좋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점검사항	유관기관(관할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는가?					중요도	★★★
단계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공연환경	안전계획	구조물안전
	○					○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		○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						
세부기준	권장 사항	- 공연 개최 관련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협조를 요청하고 담당자 연락처를 확보하였는가? · (지자체 : 홍길동 / 010-0000-0000) · (경찰서 : 홍길동 / 010-0000-0000) · (소방서 : 홍길동 / 010-0000-0000) · (병원 : 홍길동 / 010-0000-0000) · (전기 : 홍길동 / 010-0000-0000) · (가스 : 홍길동 / 010-0000-0000) · (기타 : 홍길동 / 010-0000-0000)					
	권장 사항	- 경찰서·소방서와 협의하여 주차 및 교통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지원계획을 수립하였는가?					
	권장 사항	- 화재 발생 등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소방차, 구급차량 등의 진입로를 확보하였는가?					
	권장 사항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계획(관람객·면적 당 의료소 수, 장비, 의료인 구성)은 적정한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점검사항	구조기술사로부터 구조물의 안전성을 검토 받았는가?						중요도	★★★
단계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공연환경	안전계획	구조물안전	
	○						○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			○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							
세부기준	권장 사항	- 구조기술사로부터 구조해석을 통해 안전성 검토를 받았는가?						
	권장 사항	- 구조물에 적용되는 하중(출연인원, 장비, 풍하중 등), 지반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권장 사항	- 구조물에 적용되는 하중에 따른 구조물의 전도방지(고정형 앵커볼트, 쉐플리지 등)를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						
	권장 사항	- 구조검토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였으며,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았는가?						
	권장 사항	- 최대 강풍 속도를 초과할 경우, 구조물의 L전도 및 붕괴 가능성을 고려하였는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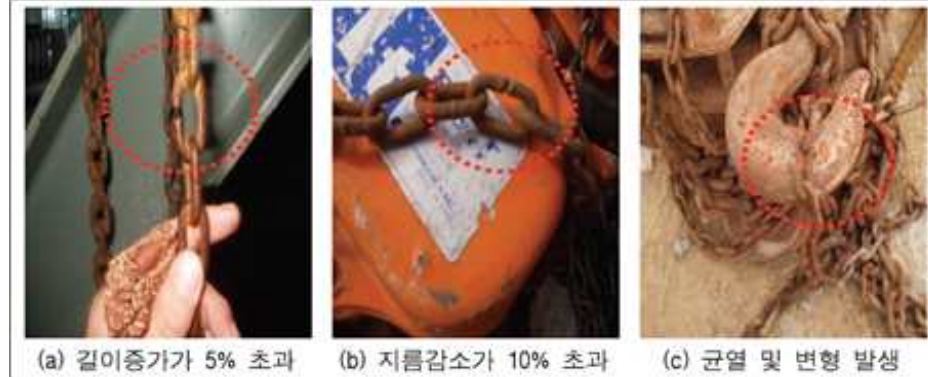
점검사항	공연을 위해 반입된 자재의 상태는 양호한가?							중요도	★	
단계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자재관리	작업안전	구조물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			○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						○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p><소방시설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소방대상물의 방염> -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무대용 합판, 무대막, 텐트, 막지 등은 방염대상물품으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p> <p><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28조 : 안전인증>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는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p> <p><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28조의5 : 자율안전확인 신고>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가설기자재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를 참고</p>									
세부기준	권장사항	- 무대용 합판, 무대막, 텐트, 막지 등은 방염성능검사를 받았는가?								
	권장사항	- 반입된 가설기자재는 안전인증을 취득하거나 성능시험을 실시하였는가?								
	권장사항	- 반입된 자재는 부식 및 결함 등이 없는지 자체적으로 검수하였는가?								
	권장사항	- 반입된 자재는 시공상세도에 표시된 치수, 재료 등 설계규격과 일치하는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점검사항	인양도구(와이어로프, 달기체인, 섬유벨트, 샤클 등)의 상태는 양호한가?							중요도	★	
단계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자재관리	작업안전	구조물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			○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						○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 달비계의 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음매가 있거나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이거나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한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달기 체인을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2.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p><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벨트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한 제품을 사용할 것 - 샤클은 안전하중 및 제조사, 핀 직경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할 것 									
세부기준	권장사항	- 와이어로프 및 달기체인의 상태는 양호한가?								
	권장사항	- 섬유벨트(벨트 슬링)의 상태는 양호하고 안전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인가?								
	권장사항	- 샤클의 상태는 양호하고 안전하중, 제조사, 핀 직경이 표시되어 있는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참고사진

손상사례	원인	손상사례	원인
	비틀림, 굽힘, 스트랜드의 이탈		부분적인 마모
	와이어 단선이 전체적으로 발생		로프 한쪽 면의 과대 마모 또는 단선
	설치하기 전 취급 부주의에 의한 손상		앵글 등의 모서리 부분에 권취할 경우에 손상
	스트랜드의 이탈, 파손		과대 압착 혹은 찌그러짐

와이어로프 육안 검사 및 손상 사례



달기 체인 육안 검사 및 손상 사례

적합 사례	부적합 사례(불량 제품)
	
	

샤클 육안 검사 및 안전하중, 제조사, 편직경 표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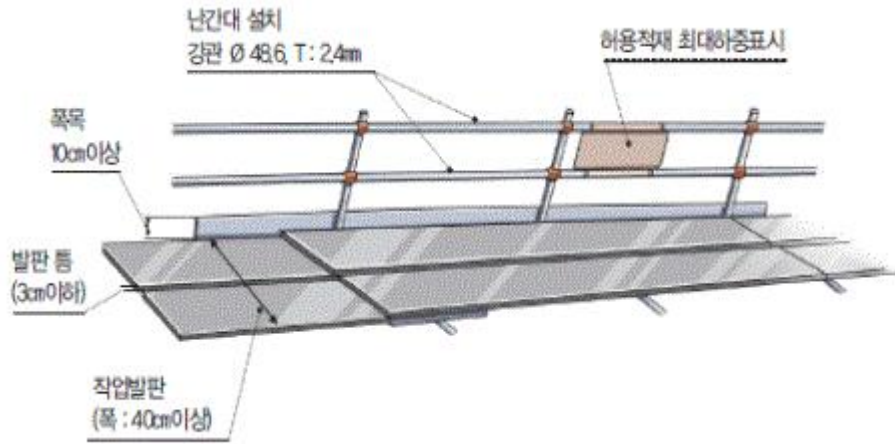


섬유벨트 안전인증 마크 및 손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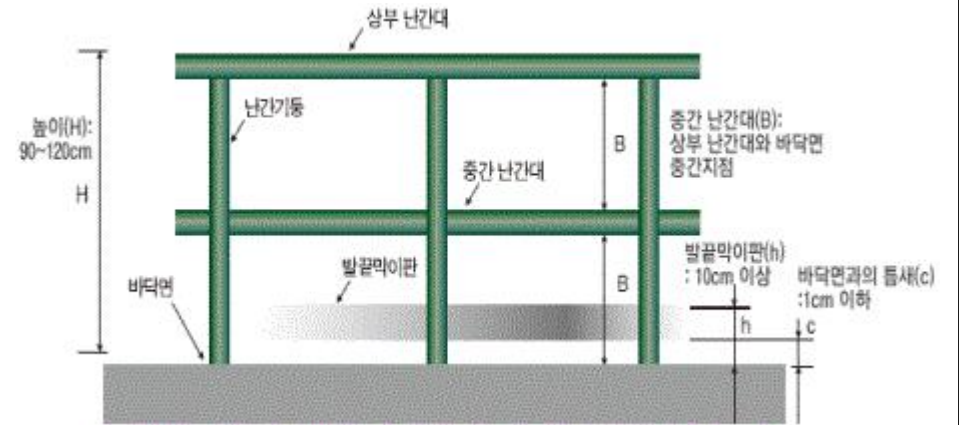
점검사항	작업장 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였는가?							중요도	★★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자재관리	작업안전	구조물안전			
단계		○				○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						○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 출입의 금지> -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 위험을 미치거나 장소 등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p>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 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p>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 조도> -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초정밀작업 : 750lux 이상 2. 정밀작업 : 300lux 이상 3. 보통작업 : 150lux 이상 4. 그 밖의 작업 : 75lux 이상</p> <p><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적용 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p>									
세부기준	권장사항	- 작업장 내 출입통제 조치를 실시하였는가?								
	권장사항	-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작업구간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는가?								
	권장사항	- 야간작업 시 150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였는가?								
	권장사항	- 작업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하였는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점검사항	올바른 작업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중요도	★★	
단계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자재관리	작업안전	구조물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				○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						○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 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p>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 : 작업의 제한>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세부기준	권장 사항	- 기상이변에 따른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고 있는가?								
	권장 사항	- 작업순서를 올바르게 정하고 작업자들에게 전파하였는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점검사항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올바르게 설치하였는가?						중요도	★★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자재관리	작업안전	구조물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단계		○				○				
참여주체	주최자 ○	기획사 ○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 : 작업발판의 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발판재료는 작업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고 작업발판은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2.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3.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5.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할 것 -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를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 중간에 설치할 것 -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상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할 것(단,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 계단의 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세부기준	권장사항	-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올바르게 작업발판을 설치하였는가? (작업공간 여유 폭 확보를 위해 상부 작업시 작업발판 2개 이상 설치 권장)								
	권장사항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의 바닥면 등에서 90cm 이상인 지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는가?								
	권장사항	- 중량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을 표시하고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권장사항	-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하였는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작업발판 설치 기준



안전난간 설치 기준

참고사진



작업발판 이탈방지조치 미설치(설치 상태 미흡)



작업발판 이탈방지조치 설치(설치 상태 양호)

점검사항	작업자가 올바르게 작업하고 있는가?							중요도	★★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자재관리	작업안전	구조물안전			전기안전
단계		○				○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						○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 보호구의 지급></p> <p>-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 안전대의 부착설비></p> <p>-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 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p> <p>-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p> <p><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 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p> <p>- 비계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은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투입할 것</p> <p><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p> <p>- 사업주는 비계 조립 및 해체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특별안전교육 2시간 이상을 실시할 것</p>									
세부기준	권장사항	- 작업자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는가?								
	권장사항	- 높이 2m이상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실시하는가?								
	권장사항	- 작업자는 같은 수직면 상의 위와 아래에서 동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참고사진

 <p>① 모체, 착용제, 충격흡수제 및 턱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p>	 <p>② 자신의 머리 크기에 맞게 착용제의 머리 고정대를 조절한다.</p>
 <p>③ 귀의 양쪽에 턱끈이 위치하도록 착용한다.</p>	 <p>④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도록 턱끈을 견고히 조여서 고정한다.</p>


안전모 착용 방법

 <p>① 양다리에 그네식 안전대를 끼우고 들어올린다.</p>	 <p>② 양어깨에 그네식 안전대를 끼운다.</p>	 <p>③ 가슴 조임줄을 채운다.</p>
 <p>④ 후를 구멍줄에 건다.</p>	 <p>⑤ 수직구멍줄인 경우 후를 안전대의 D링에 건다.</p>	 <p>⑥ 착용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p>

안전대 착용 방법

 <p>A종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맞을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함</p>	 <p>AB종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맞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함</p>
 <p>AE종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맞을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 부위 감전 위험을 방지함</p>	 <p>ABE종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맞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 부위 감전 위험을 방지함</p>

안전모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전화는 감전 위험 장소에서 착용하지 않는다. - 안전화는 훼손, 변형하지 않는다. 특히 뒤축을 꺾어 신지 않는다. - 내부가 항상 건조하도록 관리한다. - 가죽제 안전화는 물에 젖지 않도록 한다.
---	---

안전화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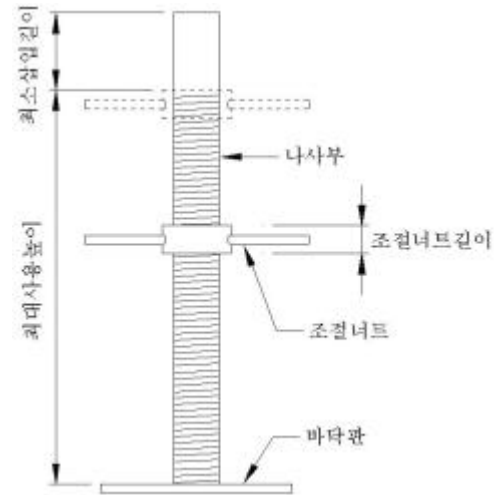
점검사항	구조물의 지반침하 상태는 양호한가?							중요도	★★	
단계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자재관리	작업안전	구조물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					○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				○		○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 : 강관틀비계></p> <p>- 비계기둥의 밑등에는 밀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밀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밀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p>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 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p> <p>- 비계 기둥의 밑등에는 밀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밀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밀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p>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 : 시스템비계의 구조></p> <p>-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p>									
세부기준	권장사항	- 지반상태는 견고하며, 적절한 지반침하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갈목 또는 깔판)를 하였는가?								
	권장사항	- 받침철물과 지반사이는 밀착되게 설치되었는가?								
	권장사항	-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1/3 이상이 지지대에 삽입되어 설치되었는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우천 시 지반 침하 우려
(지반 침하 방지 **미흡**)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위에 설치
(지반상태 **양호**)



조절형 받침철물 구성 및 설치 사례

참고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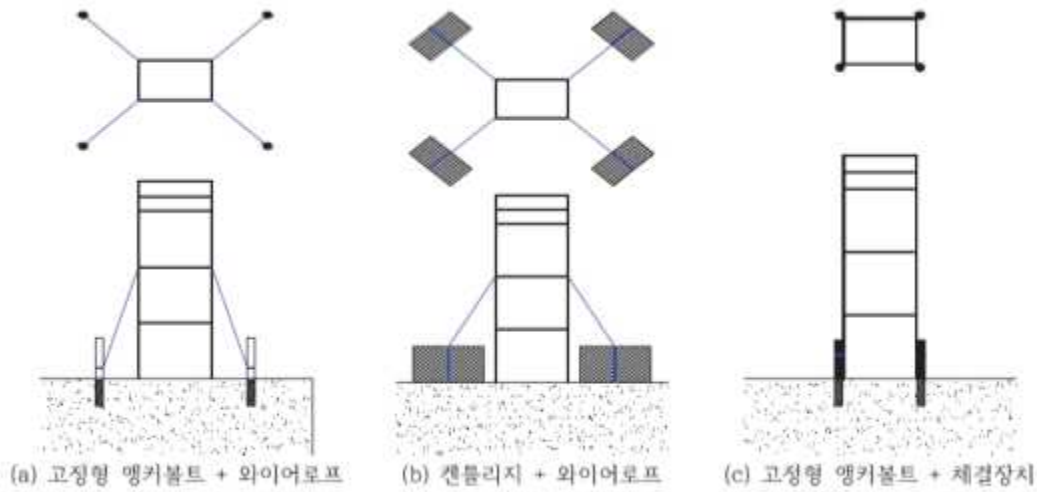


갈목 설치상태 **미흡**



갈목 설치상태 **양호**

점검사항	구조물의 전도방지 조치를 적절하게 하였는가?							중요도	★★	
단계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자재관리	작업안전	구조물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					○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				○		○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 타워크레인의 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할 것 - 와이어로프와 그 고정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와이어로프를 클립·샤클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며, 사용 중에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유지하도록 할 것 									
세부기준	권장사항	- 시공상세도에서 제시한 전도방지대로 적절하게 시공되었는가?								
	권장사항	- 가설구조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긴장력을 유지하고, 사용하는 긴장장치(전선바이스 등)는 작용하는 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가?								
	권장사항	- 켄틀리지 사용시 와이어로프가 작용하는 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권장사항	- 아웃트리거는 4방향 설치를 기본으로 하되, 4방향 설치가 어려울 경우 켄틀리지 추가 설치 등 별도의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였는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구조물 전도방지를 위한 보강 방안



구조물 전도방지를 위한 아웃트리거 미설치 (설치 상태 미흡)

참고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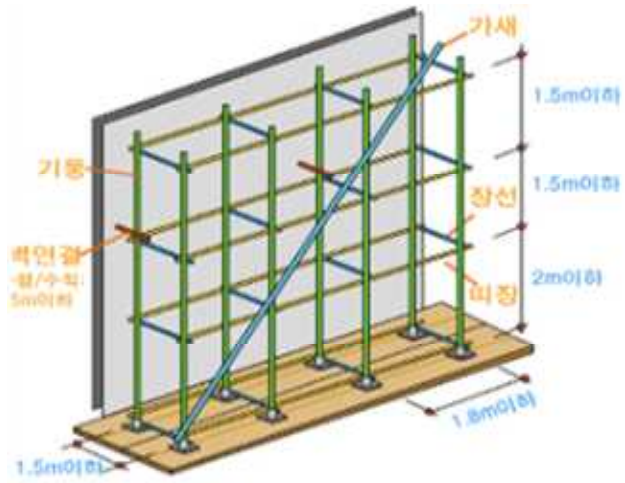


구조물 전도방지를 위한 아웃트리거 설치 (설치 상태 양호)



구조물 전도방지를 위한 아웃트리거 및 깔판 설치 (설치 상태 양호)

점검사항	가설구조물의 체결상태는 양호한가?							중요도	★★★	
단계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자재관리	작업안전	구조물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					○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				○		○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 : 시스템비계의 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수평재와 수직재는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및 제60조 : 강관비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깔목 등을 사용하여 밀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고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 : 강관틀비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밀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밀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밀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 높이가 20미터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1.8미터 이하로 할 것 									
	세부기준	권장사항	- 수평재와 수직재는 직각으로 설치하고 항상 수직 및 수평을 유지하고 흔들림이 없는가?							
권장사항		- 구조물의 연결부위는 부식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고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권장사항		- 구조물의 흔들림 및 좌굴을 방지하게 위해서 브레싱(가새재)를 견고하게 체결하고 연결부위는 부식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강관비계 설치 조립도



비계 구조물 체결 시 케이블 타이 사용(설치 상태 미흡)



비계 구조물 수직재 간 연결 상태 미흡

참고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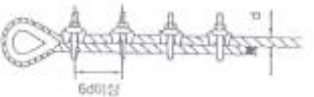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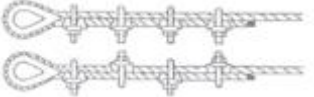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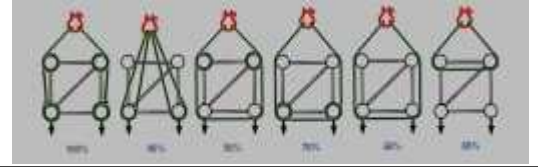

비계 구조물 체결 상태 양호(포켓 형)



비계 구조물 체결 상태 양호(연결핀 형)



비계 구조물 체결 상태 양호(클램프)

점검사항	자재 및 장비 인양도구의 체결상태는 양호한가?							중요도	★★★
단계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자재관리	작업안전	구조물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					○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						○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기타사항> - 와이어로프 클립 체결 방법 및 체결 수량은 아래 표를 참고할 것					- 와이어로프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볼트의 회전 으로 샤클이 풀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볼트 쪽에 고정 와 이어로프를 체결하고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와이어로프는 샤클의 몸체 쪽에 걸어 사용할 것			
	와이어로프 클립 체결 방법		와이어로프 클립 체결 수량						
	올바른 체결 방법	잘못된 체결 방법	와이어로프의 직경	클립 수량					
			16mm 이하	4개					
			16mm 초과 28mm 이하	5개					
			28mm 초과	6개					
- 슬링벨트를 트러스에 연결할 경우 아래 방법을 참고할 것									
사각트러스 연결방법 및 안전하중			삼각트러스 연결방법 및 안전하중						
									
세부기준	권장 사항	- 와이어로프 클립 체결 방법 및 수량은 적정한가?							
	권장 사항	- 섬유벨트(벨트 슬링) 및 샤클 등 체결도구의 체결상태는 양호한가?							
	권장 사항	- 자재 및 장비를 인양하기 위한 모터의 정격하중은 적정한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점검사항	장비는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가?							중요도	★★★	
단계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자재관리	작업안전	구조물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					○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				○		○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p><KS A 6110 무대시설의 설계 안전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동용 와이어로프는 6 이상의 안전율, 고정용 와이어로프는 4 이상의 안전율을 확보할 것(단, 한 줄로 매다는 와이어로프는 10 이상의 안전율을 확보) - 매달기에 사용하는 와이어로프는 2줄 이상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 체인은 안전율 6 이상을 확보하고 2줄 이상을 적용할 것 - 샤펴 등의 체결도구는 4 이상의 안전율을 확보할 것 <p><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벨트는 제품의 안전인증 마크에 명시된 사용안전하중과 안전율을 적용할 것 									
세부기준	권장사항	- 장비(음향, 조명, 카메라 등)는 낙하 및 전도위험이 없도록 적절한 장치(안전체인 등)를 사용하여 고정되어 있는가?								
	권장사항	- 조명장비는 안전고리를 설치하였는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참고사진



상부 고정에 의해 음향장치가 흔들리거나 회전가능(설치상태 미흡)



상·하부를 견고하게 고정(설치상태 양호)



조명기 안전고리 누락(미흡)



조명기 안전고리 설치(양호)










음향장비 전도 위험(미흡)



조명장비 전도 위험(미흡)

점검사항	무대 바닥은 충분한 하중을 견딜 수 있으며 올바르게 설치되었는가?							중요도	★★★
단계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자재관리	작업안전	구조물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					○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				○	○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무대 바닥재와 바닥재간 결속 불량 (무대 바닥 설치 상태 미흡)		무대 바닥재 파손 (무대 바닥 설치 상태 미흡)		무대 바닥재와 바닥재가 이탈되지 않도록 일체화 (무대 바닥 설치 상태 양호)				
세부기준	권장사항	- 구조물 및 무대는 장비 및 출연 인원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가?							
	권장사항	- 바닥재에 이탈방지조치를 실시하였는가?							
	권장사항	- 무대바닥의 단차 등에 의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는가?							
	권장사항	- 무대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되어있거나 적절한 미끄럼방지 조치가 되어있는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점검사항	구조물의 설치 및 마감상태는 양호한가?						중요도	★★★	
단계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자재관리	작업안전	구조물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돌출부위 안전조치 양호		백스테이지 구조물 위치 표시 양호		백스테이지 및 계단 위치 표시 양호				
세부기준	권장사항	- 구조물 설치 후 모서리 방호조치나 못 등이 튀어나온 부분을 마감처리 하였는가?							
	권장사항	- 계단 및 백스테이지 등 구조물에 식별을 할 수 있는 표시를 하였는가?							
	권장사항	- 무대단상 및 관람석의 계단에는 미끄러짐 방지조치를 실시하였는가?							
	권장사항	- 시공상세도(도면) 및 구조검토결과에 따라 올바르게 설치하였으며 구조기술사로부터 도면과 시공 상태를 비교·대조하여 점검을 받았는가?							
	권장사항	- 구조물의 침하, 변형, 변위 등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점검사항	행사장 내 텐트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중요도	★★	
단계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자재관리	작업안전	구조물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					○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				○		○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텐트 종류									
										
	대형 텐트		(몽골텐트)		소형텐트(하이픽텐트)		소형텐트(자바라텐트)			
세부기준	권장사항	- 텐트 고정용 앵커볼트의 수량 및 매립깊이는 외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충분한가?								
	권장사항	- 막지(천막)간 체결은 견고하게 하였는가?								
	권장사항	- 우천대비 배수로를 확보하고 텐트 내부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권장사항	- 강풍이 예상되는 경우 측면의 막지를 텐트 기둥에 결속하는 등 전도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하였는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텐트 전도방지 조치 **미흡**



몽골텐트 고정용 팩 고정 **미흡**



몽골텐트 고정용 팩 고정 **미흡**



몽골텐트 고정용 팩 고정 **양호**

참고사진



텐트 전도방지 조치 **양호**(모래주머니 사용)



대형텐트 베이스판 고정 볼트 일부 **누락**



대형텐트 베이스판지지 상태 **미흡**



대형텐트 베이스판 고정 상태 **양호**

점검사항	전기안전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였는가?							중요도	★★	
단계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자재관리	작업안전	구조물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						○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		○				○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									
세부기준	권장 사항	- 공연 전에 공연장 전기용량(전체 전기용량, 부스별 전기용량)을 계산하였는가?								
	권장 사항	- 사전에 계산된 전기용량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가?								
	권장 사항	- 발전차 급유에 대한 계획(인근 주유소와의 연락체계 구축 등)을 수립하였는가?								
	권장 사항	- 비상 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전원을 확보하였는가?								
점검결과	권장사항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									
문제점 및 보완계획										

점검사항	전기시설의 감전요인은 없으며 올바르게 접지하였는가?							중요도	★★★	
단계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자재관리	작업안전	구조물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						○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						○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내선규정 1445-3 : 제1종, 제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시설방법> - 400V 미만의 저압용 : 제3종 접지 (저항값 100Ω 이하) - 400V 이상의 저압용 : 특별 제3종 접지 (저항값 10Ω 이하) -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 : 제1종 접지 (저항값 10Ω 이하)									
세부기준	권장사항	- 누전차단기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권장사항	- 전선피복이 손상되거나 심선의 노출, 연결 불량, 미 접지전선 사용 등으로 감전요인이 없는가?								
	권장사항	- 배선의 접속부 및 충전부는 견고하게 고정되고 적절한 방수조치가 되어있는가?								
	권장사항	- 접지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권장사항	- 접지봉은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되어 있는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참고사진



배선용차단기 사용으로 누전에 의한 감전 및 지락사고 보호 불가(미흡)



누전차단기 사용으로 감전 및 지락사고 예방 가능(양호)



접지극 플러그 접지 미결선으로 인한 감전 및 누전차단기 부작동 가능(미흡)



접지극 플러그 접지 실시로 인한 감전사고 예방(양호)



외부에 노출된 콘센트의 방수조치 미실시로 감전사고 우려(미흡)



외부에 노출되는 콘센트 설치 시 방수형 콘센트 사용 (양호)



전선 피복 손상으로 인한 감전사고 발생 우려(미흡)



발전용 차량의 접지봉이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음(미흡)

점검사항	배선, 차단기, 배전반, 분전반의 상태는 양호한가?							중요도	★★★	
단계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자재관리	작업안전	구조물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						○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						○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									
세부기준	권장사항	- 배선 및 전장품은 견고하게 고정되고 파손 및 변형이 없는가?								
	권장사항	- 관객이 이동하는 주요 동선에는 배선이 보호덮개로 조치되어 있는가?								
	권장사항	- 전선은 주변 화기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였는가?								
	권장사항	- 개폐기(차단기)는 적합한 위치에 설치되고 열화 및 손상이 없는가?								
	권장사항	- 개폐기(차단기)에 정격퓨즈를 사용하고 있는가?								
	권장사항	- 배전반 및 분전반의 외함은 견고하게 고정되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가?								
	권장사항	- 배전반 및 분전반은 파손 및 변형이 없는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p>참고사진</p>	 <p>전선 정리정돈 미흡</p>	 <p>전선보호덮개 설치 양호</p>	 <p>콘센트와 화기 간 안전거리 미확보(미흡)</p>	 <p>누수로 인한 손상 발생(미흡)</p>
	 <p>전선 허용전류 초과 차단기 사용으로 인한 발열 및 화재 발생 가능(미흡)</p>	 <p>분전반 고정상태 미흡</p>	 <p>장애물로 인한 분전반 개방 불가(미흡)</p>	

점검사항	전기시설을 올바르게 설치하고 관리하는가?						중요도	★★★		
단계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자재관리	작업안전	구조물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						○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		○				○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p><전기사업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그 전기설비의 상요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할 것 -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할 것 -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사용전점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p>* 일반용전기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압 600V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 전압 600V 이하로서 용량 10kW 이하인 발전설비 - 단, 20kW이상의 공연장은 제외(공연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야외 공연은 해당함) 									
세부기준	권장 사항	- 전기설비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완료 후 사용 전 점검을 받았는가?								
	권장 사항	- 전기시설의 침수대비를 적절하게 하였는가?								
	권장 사항	- 전기시설 연결 부근에 인화성 및 발화성 물질이 없는가?								
	권장 사항	- 발전기, 발전차, 배전반 등은 독립적인 공간에 설치하고 펜스 등으로 위험지역표시 및 접근금지 표시가 되어있는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점검사항	가스용기의 보관상태가 양호한가?						중요도	★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자재관리	작업안전	구조물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단계		○							○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						○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p><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가스사용시설·「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 이상인 가스사용시설은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할 것(단, 월 사용예정량 2000㎡ 미만으로서 연소기가 연결된 각 배관에 퓨즈콕·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나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 부분에 설치할 것 <p><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누출경보기 및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의 검지부는 사용가스의 비중에 따라 설치할 것 -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LPG, CO2)인 경우 바닥면에서 30cm 이내에 설치 -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헬륨, 질소)인 경우 천정에서 30cm 이내에 설치 									
세부기준	권장사항	- 가스용기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밀폐된 보관실에 보관되고 있는가?								
	권장사항	- 가스용기의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가?								
	권장사항	- 가스용기의 전도방지 조치가 되어 있으며, 여러 가스용기가 있을 경우 스트랩으로 묶어서 관리하고 있는가?								
	권장사항	- 가스용기 보관 구역은 화기시설과 안전거리(2m 이상)를 확보하였는가?								
	권장사항	- 가스용기 보관 구역에 관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였는가?								
	권장사항	- 가스용기 보관함 및 가스누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가스누출경보기 및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였는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참고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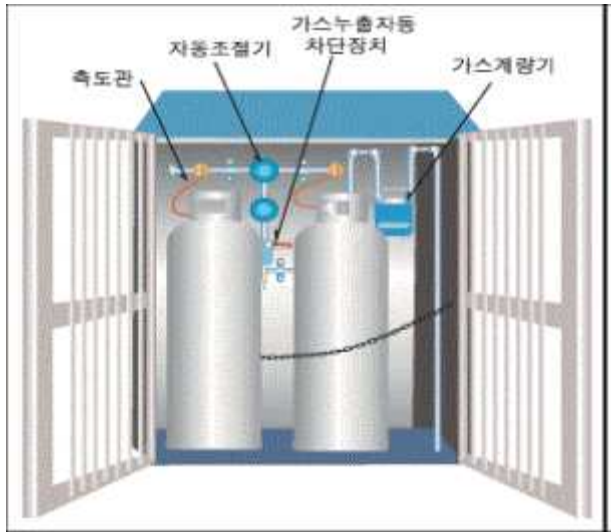
가스용기 보관 상태 미흡



가스용기 보관함 잠금장치 누락(미흡)



가스용기와 화기시설 안전거리 미 확보(미흡)







가스용기 보관 방법





가스용기 보관함 잠금장치 사용(양호)




가스용기와 화기시설 안전거리 확보 및 접근 통제(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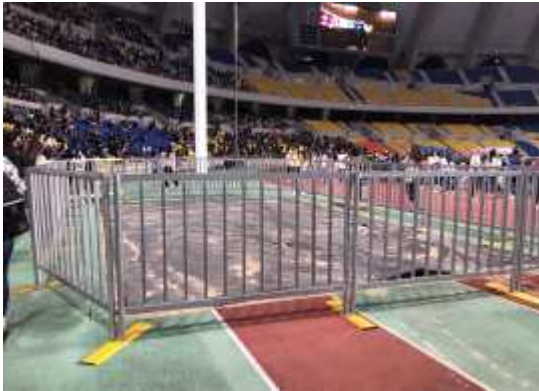
점검사항	가스 호스 및 배관 상태가 양호한가?						중요도	★★		
단계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자재관리	작업안전	구조물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							○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						○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가스배관 손상 (미흡, 강관사용 권장)		가스배관 고정부 탈락(미흡)		중간밸브의 고정상태 미흡		미사용 시 가스 밸브 잠금 상태 미흡			
세부기준	권장사항	- 가스 호스 및 배관에 손상이 없는가?								
	권장사항	- 가스배관은 바닥으로부터 이격하고 일정 길이마다 고정장치를 부착하였는가?								
	권장사항	- 가스배관은 강관 사용을 권장하며 고무호스로 사용할 경우 길이 3m 이하로 사용하였는가?								
	권장사항	- 중간 밸브가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가?								
	권장사항	- 가스 미사용 시에는 밸브가 잠겨있는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점검사항	가스 검사를 실시하였는가?							중요도	★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자재관리	작업안전	구조물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단계		○							○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		○				○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비눗물을 이용한 누설 여부 점검 시 거품 및 불쾌한 냄새 발생(미흡)				가스 누설탐지기 설치 상태 양호				
세부기준	권장사항	- 가스가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체크하고 있는가?(휴대용 가스탐지기 사용 권장)							
	권장사항	- F&B 부스의 경우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았는가?(가스누출 경보기 및 가스누출 차단장치 설치 및 가스완성검사증명서 확인)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점검사항	공연일 날씨를 확인하고 폭염 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중요도	★★★	
단계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공연환경	관객안전	안전관리계획	화재안전	
			○		○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p><폭염 발표 기준, 예보업무규정 별표 8 특보의 발표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단계 : 31℃ 이상(폭염특보 기준은 아님) - 주의보 :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시 - 경보 : 35℃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시 <p><대기오염경보 발령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PM-10) : (주의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경우 / (경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경우 - 초미세먼지(PM-2.5) : (주의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75$\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경우 / (경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경우 <p><이산화탄소 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공연장인 경우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로 유지할 것 <p><소음진동기준></p> <p>http://www.noiseinfo.or.kr/about/info.jsp?pageNo=961 참조</p>								
세부기준	권장사항	- 공연일의 날씨에 따른 위험도(풍속, 강우, 강설)를 확인하였는가?							
	권장사항	- 풍속계를 설치(지상 10m 높이)하거나 휴대용 풍속계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풍속을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권장사항	- 강풍에 의해 구조물 파편 및 기타 물품이 날릴 위험이 없는가?							
	권장사항	- 폭염 및 공기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권장사항	- 공연 및 행사 운영 시 발생 가능한 민원(소음, 생활하수처리 등)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점검결과	양호 ○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점검사항	관객의 입장 및 퇴장 관리가 양호한가?						중요도	★★★	
단계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공연환경	관객안전	안전관리계획	화재안전	
			○			○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						
참고 사진	 <p>관객 퇴장 관리 미흡</p>								
세부기준	권장 사항	- 2개 이상의 출입구를 만들고 입장로와 퇴장로를 분리하여 관객의 출입을 분산하였는가?							
	권장 사항	- 공연 및 행사장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 차량 돌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호조치는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점검사항	긴급 상황 발생 시 관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가?						중요도	★★★	
단계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공연환경	관객안전	안전관리계획	화재안전	
			○			○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								
세부기준	권장 사항	- 긴급 상황 발생 시 관객의 피난동선을 확보하였는가?							
	권장 사항	- 관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송시설 및 종합상황실을 준비하였는가?							
	권장 사항	- 관객 대상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는가?							
	권장 사항	- 노약자,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관객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점검사항	위험구역에 관객의 접근을 통제하였는가?						중요도	★★★
단계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공연환경	관객안전	안전관리계획	화재안전
			○			○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					
참고사진								
	위험 구역 접근 통제 미비(관리 상태 미흡)				위험 구역 접근 통제(관리 상태 양호)			
세부기준	권장사항	- 위험구역에 관객 접근을 통제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였는가?						
	권장사항	- 위험구역에 펜스 및 safetyline을 설치하고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는가?						
	권장사항	- 카메라 등 장비가 설치된 타워 및 위험구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관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권장사항	- 환풍구 등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시설물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점검사항	공연장에 충분한 안전공간을 확보하였는가?						중요도	★
단계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공연환경	관객안전	안전관리계획	화재안전
			○			○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		○					
참고사진								
	무대 및 객석 사이 안전공간 확보(관리 상태 양호)				안전펜스 설치를 통한 관람공간 확보(관리 상태 양호)			
세부기준	권장사항	- 관객 동선 및 관람공간을 제한하기 위하여 펜스를 설치하고 견고하게 고정하였는가?						
	권장사항	- 야간 공연 시 펜스에 시인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였는가?						
	권장사항	- 무대와 객석 사이 충분한 안전공간(2m 이상)을 확보하여 관객이 무대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였는가?						
	권장사항	- 객석과 객석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였는가?						
	권장사항	- 스탠딩 구역의 출입 적정 인원을 파악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점검사항	긴급 상황 발생 시 조치계획이 양호한가?						중요도	★★★	
단계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공연환경	관객안전	안전관리계획	화재안전	
			○				○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		○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								
세부기준	권장 사항	- 긴급 상황 발생 시 빠른 조치를 위하여 안전관리자 연락처 및 비상연락망을 게시하였는가?							
	권장 사항	- 응급의료장비(AED 등)비치 및 의료진과 구급차를 배치하였는가?							
	권장 사항	- 구조물 사고 등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크레인 등 장비 보유자(업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점검사항	공연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는가?						중요도	★★★	
단계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공연환경	관객안전	안전관리계획	화재안전	
			○				○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		○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								
세부기준	권장 사항	- 공연 전 안전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하여 점검을 수행하였는가?							
	권장 사항	- 공연 및 행사 중 자체 안전점검(수시 안전점검)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였는가?							
	권장 사항	- 안전점검결과 부적합 사항 등에 대한 조치는 즉시 시행되고 있는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점검사항	안전관리요원 교육 및 배치상태가 양호한가?						중요도	★★★	
단계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공연환경	관객안전	안전관리계획	화재안전	
			○				○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		○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								
세부기준	권장 사항	- 안전관리요원은 임무 수행에 적합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권장 사항	-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임무별 안전교육(1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비상연락망을 숙지시켰는가?							
	권장 사항	- 근무표에 의해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며, 교대 시 근무수칙 및 근무 중 특이사항을 적절히 인계되도록 운영되고 있는가?							
	권장 사항	- 혼잡이 예상되는 안전취약구역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주기적 순찰계획을 수립하였는가?							
	권장 사항	- 안전관리요원에게 필요한 안전용품과 비표를 지급하고 시인성이 좋은 복장을 지급하였는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점검사항	공연자에 대한 안전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을 확보하였는가?						중요도	★	
단계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공연환경	관객안전	안전관리계획	화재안전	
			○				○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p><공연법 제11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 안전교육></p> <p>- 공연자*는 공연 전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을 것</p> <p>*공연자란 공연을 주재하거나 직접 하는 자</p>								
세부기준	권장 사항	- 공연자(출연자, 공연 참여자, 감독, 스태프, 크루 등)에 대한 안전교육(1시간이상) 수료여부를 확인하였는가?							
	권장 사항	- 출연자와 관객의 안전을 위하여 출연자 이동로를 별도로 확보하였는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점검사항	불꽃놀이 및 특수효과 사용 시 화재예방조치를 하였는가?					중요도	★★	
단계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공연환경	관객안전	안전관리계획	화재안전
			○					○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p><총포화약법 시행령 제23조 : 꽃불류 상용의 기술상의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는 꽃불류의 종류 및 중량에 따라서 도로·건물·사람이나 가축등에 위해가 없도록 이들과 안전한 거리를 둘 것 -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일 때에는 꽃불류 사용을 중지할 것 -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의 부근에는 소화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둘 것 - 꽃불류는 용기에 넣어 뚜껑을 덮고, 그 용기에는 불기를 접근시키지 아니할 것 - 사용준비가 끝난 쏘아 올리는 꽃불류는 2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다른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쏘아 올리는 꽃불류는 20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퍼지도록 할 것 							
세부기준	권장 사항	- 풍속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풍속에 따른 불꽃놀이 진행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시) 풍속 5m/s 이상 시 불꽃놀이 자제 요망						
	권장 사항	- 불꽃 및 화염 사용 시 꽃가루 등의 가연물질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이 없는가? (불꽃 및 화염과 꽃가루 사용 시간 간격 확보 또는 방염 처리된 꽃가루 사용 권장)						
	권장 사항	- 낙진, 불발된 폭죽이 낙하할 수 있는 구역에 대한 통제는 적절한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점검사항	공연 및 행사장 내 소화기 배치가 양호한가?						중요도	★★	
단계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공연환경	관객안전	안전관리계획	화재안전	
			○					○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p><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4조 : 설치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소화기 : 보행거리 20m 이내 설치 - 대형소화기 : 보행거리 30m 이내 설치 								
세부기준	권장 사항	- 공연 및 행사 규모에 맞게 적절한 소화기를 준비하고 정위치에 배치하였는가? (부스별 1개 이상의 소화기 설치, 무대기계나 전장부품이 있는 곳은 청정가스소화기 사용)							
	권장 사항	- 안전핀, 호스, 노즐의 부착상태가 양호한가?							
	권장 사항	- 소화기 사용가능여부(지시압력계바늘이 녹색범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권장 사항	- F&B 부스의 경우 K급 소화기를 설치하였는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점검사항	소방시설 위치 안내, 흡연 장소 지정 등 화재예방 조치가 양호한가?						중요도	★	
단계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공연환경	관객안전	안전관리계획	화재안전	
			○					○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								
세부기준	권장 사항	- 소방시설의 위치를 표기하고 배치도를 부착하였는가? (야외 공연이나 소방시설 배치도 부착이 어려운 경우 공연 쉬는 시간에 무대영상을 통해 소방시설 및 응급조치방법, 대피 집결지 등을 안내)							
	권장 사항	- 행사장 내 흡연 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권장 사항	- 화기주변에 가연물을 보관하지 않는가?							
	권장 사항	- 화기와 인접한 막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석고보드 등으로 차단하였는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점검사항	작업장 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였는가?					중요도	★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작업환경		작업계획	작업안전	자재관리
참여주체	주최자 ○	기획사 ○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 출입의 금지> -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 위험을 미치거나 장소 등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p>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 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p>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 조도> -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초정밀작업 : 750lux 이상 2. 정밀작업 : 300lux 이상 3. 보통작업 : 150lux 이상 4. 그 밖의 작업 : 75lux 이상</p>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 : 작업의 제한>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p> <p><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적용 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p>								
세부기준	권장사항	- 작업장 내 해당 작업자 외 출입통제 조치를 실시하였는가?							
	권장사항	-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작업구간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는가?							
	권장사항	- 야간작업 시 150lux이상의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였는가?							
	권장사항	- 작업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하였는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점검사항	올바른 작업 및 해체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중요도	★★	
단계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작업환경	작업계획	작업안전	자재관리	
				○		○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					○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								
세부기준	권장사항	- 기상이변에 따른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고 있는가?							
	권장사항	- 해체작업순서가 포함된 해체작업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점검사항	작업 및 해체계획서에 맞게 올바르게 작업하는가?					중요도	★★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작업환경			작업계획
참여주체	주최자 ○	기획사 ○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 보호구의 지급></p> <p>-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p> <p>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p>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 안전대의 부착설비></p> <p>-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 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p> <p>-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p> <p><유해·위험작업의 취급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 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p> <p>- 비계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은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투입할 것</p> <p><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p> <p>- 사업주는 비계 조립 및 해체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특별안전교육 2시간 이상을 실시할 것</p>							
세부기준	권장사항	- 작업자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는가?						
	권장사항	- 작업근로자는 같은 수직면 상의 위·아래에서 동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가?						
	권장사항	- 해체 전 대상 구조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해체작업을 수행하는가?						
	권장사항	- 해체는 사전에 계획된 순서대로 실시하며, 수평 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고 있는가?						
	권장사항	- 해체 시 구조물 전도 방지조치를 실시하였는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참고사진

 <p>① 모체, 착용재, 충격흡수재 및 턱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p>	 <p>② 자신의 머리 크기에 맞게 착용재의 머리 고정대를 조절한다.</p>
 <p>③ 귀의 양쪽에 턱끈이 위치하도록 착용한다.</p>	 <p>④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도록 턱끈을 견고히 조여서 고정한다.</p>


안전모 착용 방법

 <p>① 양다리에 그네식 안전대를 끼우고 들어올린다.</p>	 <p>② 양어깨에 그네식 안전대를 끼운다.</p>	 <p>③ 가슴 조임줄을 채운다.</p>
 <p>④ 옥을 구멍줄에 건다.</p>	 <p>⑤ 수직구멍줄인 경우 옥을 안전대의 D링에 건다.</p>	 <p>⑥ 착용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p>

안전대 착용 방법

 <p>A종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맞을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함</p>	 <p>AB종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맞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함</p>
 <p>AE종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맞을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 부위 감전 위험을 방지함</p>	 <p>ABE종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맞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 부위 감전 위험을 방지함</p>

안전모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전화는 감전 위험 장소에서 착용하지 않는다. - 안전화는 훼손, 변형하지 않는다. 특히 뒤축을 꺾어 신지 않는다. - 내부가 항상 건조하도록 관리한다. - 가죽제 안전화는 물에 젖지 않도록 한다.
---	---

안전화 주의사항

점검사항	철거 후 자재를 올바르게 관리하였는가?						중요도	★	
단계	기획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철거단계	작업환경	작업계획	작업안전	자재관리	
				○				○	
참여주체	주최자		기획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기술사		시공사	
	○		○					○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								
세부기준	권장사항	- 해체된 자재들은 구조물 위에 적재하지 않고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는가?							
	권장사항	- 해체 후 자재에 결함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하였는가?							
	권장사항	- 해체 후 결함이 확인된 자재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였는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문제점 및 보완계획									